

제 1 편 총 칙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및 다자간매매채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기준에서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의결은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가 할 수 있음
(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 구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을 제6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2.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감독
4. 책무구조도(지배구조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
5. 그 밖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의2(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 내부통제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개정
-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와 임원이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내부통제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내부통제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2. 임직원이 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이 기준 위반사실을 대표이사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4. 각 임원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에 대한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 기준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
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 금융투자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라.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마.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이 기준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1) 해당 위반행위와 연관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나. 특정 임직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가 금융투자회사 본점의 여러 부서 또는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 8.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 임원이 자신의 책무에 대한 관리의무를 수행하면서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③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지점장) 지점장(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에 보고하고, 관계법령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직원)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편 및 제3편에서 같다)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내부통제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2. 내부통제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 5. 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6.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

④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3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 2. 제3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제11조 삭제 <2025. 1. 23.>

제12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① 회사(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는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 준수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 3 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제1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제14조(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회사(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게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 대

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4.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5.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6. 기타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경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제18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다만,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한다.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9조(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①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과정에는 직무윤리, 투자자 보호,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23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① 회사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처 운영, 위반 시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 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상위 결재권자,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임직원 검칙에 대한 평가·관리) ①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검칙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한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임원 등은 해당 임직원 겸직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내부고발제도) ①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회사 또는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명령휴가제도)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직무분리기준) 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 4 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1장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제1절 영업의 일반원칙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30조(영업의 일반원칙)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법 제71조 및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집합투자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에 담당하는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

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및 제4-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① 회사(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¹⁾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② 회사(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1)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하여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 한 법인의 특정증권등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99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4조(신탁업)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신탁업을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 한 법인의 특정증권등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신탁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유지에 관한 사항

제2절 영업점 통제 및 파생상품 영업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① 준법감시인이 제22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2.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3.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 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2. 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1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3. 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을 할 때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1. 영업점의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2. 영업점 근무 직원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3. 영업점 소속 임직원의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4.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⑨ 회사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고객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간은 직원과 분리되어야 하며, 영업점장 및 영업점 영업관리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사이버룸의 경우 반드시 “사이버룸”임을 명기(문패 부착)하고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회사는 다른 고객이 사이버룸 사용 고객을 직원으로 오인하지 아니 하도록 사이버룸 사용 고객에게 명패, 명칭, 개별 직통전화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점장 및 영업관리자는 사이버룸 등 고객전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매매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 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영업점은 영업점의 업무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필요한 영업점의 자체점검 방법, 확인사항, 실시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및 변경2) ① 회사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회사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7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3) ①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③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8조(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계좌 개설시의 준수사항 점검4)

- 2)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작성 시 제36조, 제37조 제외
- 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 작성 시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 제외

- ① 회사는 영업점별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1인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사 또는 인근 영업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영업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영업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고객이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고객이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객으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해당 직원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④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은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에게 다른 임직원을 다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래내용이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2.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3.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 여부
 4. 계좌의 실현·미실현 손익규모
 5. 포지션의 과도한 집중여부 등

제38조의2(파생결합증권 등의 구분 관리) ①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절에서 ‘헤지자산’이라 한다)과 그 밖의 회사의 고유재산(이하 이 절에서 ‘고유재산’이라 한다)을 구분 관리(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구분 관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4)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준법감시인”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준법감시인은 파생상품 영업에 있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권유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업무 지침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주가연계증권(ELS)·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및 기타파생결합증권(DLS)·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으로 구분하고, 헤지자산은 파생상품 업무보고서(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중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헤지자산을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1. 현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별도의 구분자 부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현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2. 내부 대여금·차입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거래기록 작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내부대여금·차입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헤지자산 : 운용자산별 북(Book) 또는 구분자 부여, 운용자산별 보유계좌 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운용자산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 ④ 회사는 파생결합증권 헤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 항목을 가감하고, 헤지자산 운용 손익은 연 1회 이상 정산하여 현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제1항제7호의2가목에 따른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위하여 수시로 헤지자산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① 회사는 제38조의2에 따른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헤지자산과 기타 고유자산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고, 헤지자산 현황을 일별로 산출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 내 다른 전산시스템과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사전에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입력 및 수정 등의 작업이 수행된 후에는 그 작업에 대한 접속기록 및 작업 내용 등 관련 기록을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제38조의4(투자대상자산의 요건) ① 회사는 헤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단, 신용평가등급 기호가 +, -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경우 하위 등급을 포함하며, 신용평가등급 기호 분류체계가 다른 경우 명시된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 및 단기신용등급(만기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2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BBB 및 단기신용등급 A2
3. 헤지자산운용담당부서와 독립적인 기업평가 담당 내부통제부서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A 및 단기신용등급 A2

③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헤지를 위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산을 부적합 헤지자산으로 정하고 헤지자산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장성 및 유동성이 떨어져 단기간내 처분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자산
2.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비상장주권(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3.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동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4. 처분 및 상환에 제한조건이 있는 자산
5. 취득시점 현재 투기등급으로 지정된 부실자산 또는 부실의 현저한 징후가 보이는 자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항에서 '계열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단, 상장주식은 제외한다) 및 계열회사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 증권. 다만,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 및 유동화증권이 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가능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타 헤지자산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산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헤지자산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산의 총 합계액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예시 : 100분의 10) 이하 이어야 한다.

1.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예시 : 100분의 5) 이하
 2. 제38조의4제3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예시 : 100분의 5) 이하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자산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예시 : 100분의 5) 이하
 4.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자산(단, 예금·예치금 및 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발행잔액의 100분의 ○○(예시 : 100분의 5) 이하
- ⑤ 회사는 헤지자산을 채무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유동성 위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종에 따른 채무증권 종류별(채무증권의 종류는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참조한다) 투자한도를 정하고 동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할 것
2. 투자가능 최저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정하고 동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할 것

⑥ 회사는 헤지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10에 따라 산정한 회사의 유동성비율이 100%이상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포함된 리스크협의체의 의견을 거쳐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한 의결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부적합 헤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한도를 변경하거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3. 제5항에 따른 채무증권의 취득한도를 변경하거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⑧ 리스크협의체는 제7항에 따른 의견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헤지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2. 파생결합증권 상환자금의 조달에 미치는 영향
3. 헤지자산의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

제38조의5(헤지자산의 분산운용) ① 회사는 주가연계증권(ELS)·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기타파생결합증권(DLS)·기타파생결합사채(DLB) 관련 헤지

자산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헤지자산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8이하(2022년 12월 30일까지 100분의 15이하,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2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서 카드사채로 분류된 채무증권(코드D)
 2. 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서 캐피탈사채로 분류된 채무증권(코드E)
- ② 회사는 이 기준을 개정하기 이전의 발행분을 포함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8조의6(외화유동성 확보) ① 회사가 해외 주가지수, 금리, 통화, 일반상품 등(이하 “해외지수등”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추가연계증권(ELS) 또는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고 해외거래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자체 헤지하는 경우(이하 “해외지수등의 자체 헤지”라 한다) 회사는 해당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총액(대차대조표상 매도파생결합증권 부채잔액 중 해당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외화자산(미국 달러, 유로, 엔, 홍콩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20 이상(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이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외화현금
2. 외화예금
3. 미국 국공채(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입한 미국 국공채를 포함한다)
 - 가. 대여자가 증권회사 이외의 자일 것
 - 나. 대차거래의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상환 기한이 1개월 이상일 것
 - 다. 대차기간 중 반환은 차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
 - 라. 해외거래소에 납부하기 전에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할 것
 - 마. 해외거래소에 증거금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약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유사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체결한 다음 각 목의 계약(거래상대방의 외화 제공 의무가 명시된 계약에 한한다) 금액
 - 가. 외화 대출계약
 - 나. 통화스왑 또는 외환스왑에 대한 계약

- 다. 외화 환매조건부매도거래에 대한 계약
 5. 외화 환매조건부매도거래를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외화 환매조건부매도거래 대상증권
 6. 수시 또는 익 영업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외화 순유입 금액
 - 가. 외화 환매조건부매매
 - 나. 외화 발행어음
 - 다. 외환선도, 외환스왑, 통화스왑
 - 라.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외화 투자일임재산,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영하는 외화 특정금전신탁재산(해당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인출 가능금액으로 한한다)
 7. 해외거래소에 납부한 증거금 중 출금 가능금액
 8. 현물환 매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순미수금 중 익 영업일 결제 금액
- ② 회사는 이 기준을 개정하기 이전의 발행분을 포함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 확보와 관련하여 회사는 제1항제4호를 제외하 나머지 외화자산은 헤지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위기상황 대응계획(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3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사가 수립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가동하여 제1항의 외화자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해소 후 익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의7(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의 위탁 및 수탁) 회사(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투자매매업자에 한한다)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는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만 위탁 또는 수탁할 것
2. 다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 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조, 특성, 기초자산요건 충족여부, 위험도 등 상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 나. 위탁자가 동 상품의 발행, 운용 및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제정, 운영하는지 여부

다. 위탁자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

라. 위탁자가 투자설명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 상품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

3. 위탁자와 수탁자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것

제38조의8(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 확인)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험회피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절 계좌관리 및 매매주문 처리 등

제39조(투자자계좌 관리·감독)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이하 “과당매매”라 한다)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당매매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그 내용의 타당성
4.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② 회사는 과당매매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를 선별하여 해당 계좌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직원이 행한 투자권유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점검대상계좌의 선정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투자일임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위·변조 증권의 입고 및 착오주문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계좌에서의 매매주문 차단 및 수탁거부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정의)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10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주문시스템”이란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이란 위탁자가 매매주문을 생성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전송하는 것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3.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이란 전자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기(하드웨어)를 말한다.
4. “거래소 시스템”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4의2. “넥스트레이드 시스템”이란 넥스트레이드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사와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사 시스템과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거래체결 내역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사의 통신제어시스템(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6. “프로세스”란 회사와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7. “호가제출시간”이란 호가가 대외계시스템(FEP)에 도달한 시점부터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제40조의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의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내지점등이 자사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금융투자업자(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와 국내지점등 사이
2.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지점등과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 사이

제40조의5(차별적 제공 금지) ①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

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2.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3.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 회사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③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3.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4.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할 것.
5.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②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

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의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 의무)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의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과 관련한 전산, 통신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의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①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처리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의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투자자의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제41조(투자자 예탁자산의 보관·관리) ①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 및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의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증서 등은 보호예수기관에 보호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당해 기준에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① 회사는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시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회사는 제3항(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

른 수탁거절 사유를 계좌개설 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고객의 승인 없이 고객의 파생상품, 기타 고객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⑥ 회사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 및 중개회사 선정기준

제43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① 회사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신탁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행사한다.

②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 ④ 회사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2항 단서는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1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법규등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5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중개회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용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 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절 투자광고 및 금융사고 예방

제46조(투자광고 방법·절차) ① 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관련법령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심사 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47조(법인 영업) ① 법인영업 담당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상태 등이 불량한 법인을 증거금징수 예외기관으로 등록하는 행위
2. 허수 매매주문 수탁
3. 고유계정과 금융투자상품 연계매매를 통한 부당이득 제공 또는 손실보전 행위
4. 채무증권의 저가매도 및 고가매수, 투자자문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5. 기타 관계법령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거래

② 회사는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선정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하며, 동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집합투자증권 판매) ① 회사 및 임직원은 자신이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 또한 집합투자상품별로 보상이나 성과보수 지급

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거나, 집중적인 판매촉진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총괄하는 부서는 집합투자증권별로 판매보수율 또는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증가율 등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증가율이 높아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조사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상수익율의 보장
2. 예상수익율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의 사용
3.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① 임직원은 고객이 채무증권을 입고하는 경우 위조, 변조, 도난 신고가 접수된 채무증권 인지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일 신규로 개설된 계좌 또는 계좌개설 후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계좌에 채무증권이 입고된 후 당일 매도되거나 또는 매도 후 즉시 출금(일부출금 포함) 요청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반드시 예탁결제원에 사고 채무증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1절 일반원칙

제50조(고객이익 우선)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때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때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정보의 유지·관리

제53조(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4. 기타 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제54조(비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 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 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되어야 한다.

제55조(비밀 정보 제공 절차) 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 나.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 다.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정보차단벽

제1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부문

제56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 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제58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59조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57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 금융투자업의 종류(법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겸영·부수 업무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8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① 회사는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부문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이하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9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①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게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 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⑤ 제8조 및 제15조는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 준용한다.

제60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관 사내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

제61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62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 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제64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① 제63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관 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관리 및 상시 감시 등

제65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66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관 사외 정보교류 차단

제67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3자에 대해 제62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제63조 및 제64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8조(복합점포 설치·운영) ①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출입문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2. 회의실, 상담실등 상담공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점포에서 고객이 상담·자문 목적으로 제56조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사전에 지정한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9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전송요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0조(임직원의 겸직)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5관 기타

제71조(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예외적 교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수령자(또는 임시 편입 대상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일시 또는 편입 일시 및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등
 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유지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제1항에 따른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

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2조(임직원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무단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의사항을 환기하여야 한다.

제73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없는 경우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제65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66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제3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제1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74조(기본 원칙)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장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⁵⁾.

1. 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③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5)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5조제2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거래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1.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 ⑥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⁶⁾이 개설한 계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임직원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 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6)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 법 제286조제1항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한다.

제76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을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

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회사는 착오주문 발생 등 긴급 상황시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의 매매주문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제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제77조(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수립)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8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운영)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9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유출·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0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운영

제81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① 회사(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 확인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 등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정보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임

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2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①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3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회사는 STR과 CTR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 보고체제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84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①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③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④ 회사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⑤ 회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85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① 회사는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본점 등”이라 한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6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회사는 임직원의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된 사실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은 임직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민원 및 분쟁 처리

제87조(고충처리 정책)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8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②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장 등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회신문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회신문 전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내용을 민원담당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①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준법감시부서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에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방 운영 등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

제90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
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지의 여부 등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 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9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절 전산시스템

제92조(전산설비 및 매매시스템) ① 회사의 전산설비는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② IT담당 임직원은 전산화된 매매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작업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유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2. 고객 또는 매매거래 정보의 보안의 적정성
3. 전산처리시스템 용량의 적정성
4. 매매주문 전산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93조(보안관리) ① 회사는 시스템보안, 통합단말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관리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해당 업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인증한 침입차단프로그램의 설치유무 및 시스템의 운영실태
2. 전자금융거래가 국가기관이 인증한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프로그램의 설정과 운영실태
3.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 유무 및 운영실태
4. 복구방안, 비상계획의 유무 및 실효성
5. 복구전담팀의 운영여부
6.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및 사이버 영업점의 보안 안전성

②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매매거래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암호화를 위한 키의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밀번호 변경, 접근 권한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및 카드키 등의 접근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IT담당 임직원의 퇴사 또는 타부서 이동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등을 반드시 변경하여 적절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94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①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체주문수단을 통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절 대표주관회사 업무

제95조(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6조(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내실 있는 기업실사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동안 기업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는 경우

에 한한다)의 경우 3개월

2. 신용등급이 투자자격등급(국내 신용평가회사 BBB- 이상, Moody's는 Baa3 이상, S&P는 BBB- 이상, Fitch는 BBB-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이상인 무보증사채 발행의 경우 3영업일
3. 그 외의 경우 7영업일

제97조(기업실사 수행시 참여의무자)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실사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은 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1. 인수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업금융업무(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외국 변호사 포함)
4. 공인회계사(외국 공인회계사 포함)
5. 금융투자분석사(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를 말한다)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증권분석, 산업분석 등에 관한 전문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절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경영

제98조(이해상충방지) 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회사에 한한다. 다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운용하는 경우 자기 또는 특정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이 매 사업연도 별로 총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전담중개업무의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특정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기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중개업자로 선정

하거나 자기와 계열회사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조사분석 자료의 작성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타사에 지급하는 동종의 수수료를 상한을 초과하는 행위
4. 회사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규약에 경영 참여 방식의 사모집합투자기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가 주권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매도하는 행위

제99조(내부통제) 회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부문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문과는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을 사용할 것
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부문과 미공개중요정보를 생산 취득하는 부문간에 정보를 교류한 내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샘플 테스트를 통하여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할 것.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4. 회사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사전자산배분과 관련된 법규 및 협회의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다만,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이 자신이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준법감시인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0조(운용성과보고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용성과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분기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용기간 중 주식의 매매 회전을
2. 해당 운용기간 중 조사분석 자료의 작성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와 관

련하여 투자중개업자(자신 포함)에게 지급한 수수료

3.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해당 운용기간 중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4. 해당 운용기간 중 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종목 중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매수·매도 상위 10개 종목명

제9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

제100조의2(핵심상품설명서 등 검증)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자기가 운영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법 시행령 제271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운용 행위 점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자기가 운영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100조의2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271조의5제7항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자기가 운영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담당부서)에게 그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0조의4(투자자예탁금 등의 이체 관리) 자기가 운영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관련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및 환매대금 등의 이체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및 환매대금 등이 지급되는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이체 가능한 계좌(투자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등의 명의 계좌)를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등록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및 환매대금 등이 지급되는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이체 가능한 계좌(투자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등의 명의 계좌)를 회사 전산시스템(출납관리 위탁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사전 등록

제4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

제1절 불공정거래 행위

제101조(정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02조(임직원 금지사항) ① 임직원은 제101조 각 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제101조 각 호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매매거래 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정보이용 교란행위

제103조(정의) ① “정보이용 교란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② “중요정보”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104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 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보”와 관련한 정보차단벽 설치·운영, 임직원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및 정보차단벽 통과 등에 대해서는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중요정보”와 관련된 “지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정보의 중요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65조의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등재하여 임직원의 매매거래 및 회사의 고유재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매매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이 “중요정보”와 관련된 사내 및 사외 회의, 통신행위를 하는 경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시세관여 교란행위

제105조(정의) ① “시세관여 교란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② “알고리즘 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란 IT,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6조(점검시스템 구축·운영) 회사는 제105조의 “시세관여 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7조(알고리즘 거래 관리) ①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알고리즘 거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는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알고리즘 거래”프로그램을 구입 또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프로그램 사용 전에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로부터 “시세관여 교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매매주문 기법의 포함 여부 등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는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 사용자의 임의변경, 오류 및 해킹 등으로 인한 시세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프로그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가 별도로 구입한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회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세관여 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공통사항

제108조(예방교육의 실시) 회사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9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조치) ①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이를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등 조사를 위하여 관련법령등에 따라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요구 사실 및 내용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1]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이용 안내문 (예시)

※ **[회원사안내]** 본 안내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가 설명해야 하는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에 대한 예시 안내문입니다. 본 예시의 내용은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니 각 회사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그 내용·조건 등에 맞도록 안내서를 작성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투자자를 위해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바랍니다.

본 안내문은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업무규정을 준수하여 투자자에게 주문방법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투자자가 주문방법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안내

주문서비스		영업점	ARS	MTS	HTS, 홈페이지	시스템 트레이딩	특화주문7)
주문 접수	주문 생성· 입력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의 컴퓨터 (자동주문 시스템)	
	전달매체	공용망	전화망 (유무선) 공용망	전화망(무선) 공용망(무선)	공용망	공용망	공용망
	접수매체	회사 임직원	회사 시스템	회사 시스템	회사 시스템	회사 시스템	회사 시스템
호가접견	일반원장	일반원장	일반원장	일반원장	일반원장	일반원장	미니원장8)
호가제출	공용 프로세스	공용 프로세스	공용 프로세스	공용 프로세스	공용 프로세스	공용 프로세스	전용 프로세스
이용조건	-	전자거래 등록	전자거래 등록	전자거래 등록	전자거래 등록	전자거래 등록	-자체주문시스템 모유 투자자 -투자자의 신용도·전문성·위 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비용9)	위탁매매수 수수료	위탁매매수 수수료	위탁매매수 수수료	위탁매매수 수수료	위탁매매수 수수료	위탁매매수 수수료	위탁매매수수료 및 이용수수료
시세정보제공방 식10)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미가공

* 기타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해당 영업점 및 본사 고객센터(☎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특화주문서비스는 이용조건을 충족하는 고객(고빈도주문 고객)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주문서비스를 말합니다.

8) 미니원장이란 일반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장의 기능 및 점검항목이 축소된 원장입니다.

9) '비용' 부분은 매매거래설정약관 또는 홈페이지 수수료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특화주문을 제외한 주문 서비스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가공된 시세정보 데이터를 받습니다.

2. 전용프로세스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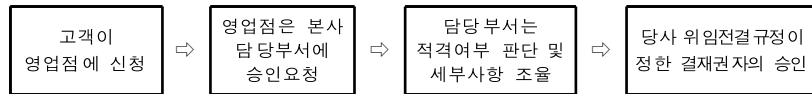
프로세스란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와 당사간 호가 및 거래 체결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합니다. 프로세스의 종류는 특정 목적의 업무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스(이하 '전용프로세스'라 한다.)와 전용프로세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를 일컫는 공용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전용프로세스와 공용프로세스는 각 프로세스의 지리적 위치, 기술적 한계 등에 따라 속도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는 공용프로세스 배정이 원칙이며, 전용프로세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신청 고객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용프로세스의 할당 여부를 결정하며,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영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전용프로세스 이용자의 주문건수가 적거나, 거래체결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전용프로세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프로세스를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용프로세스의 구체적 이용조건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고객센터(☎XXXX-XXXX)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프로세스 신청 절차]



본인은 상기와 같이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の内容을 적절히 설명받고 선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20 년 월 일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별지 2]

주식 과당매매 모니터링 운영 기준

본 기준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주식 과당매매 계좌의 선정·점검과 관련된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입니다.

1. 과당매매 점검 대상 계좌 선정 기준

- 계좌주가 일반투자자이고,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계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다만, 매매회전율(①) 및 손실금액 비중(②)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과당매매 점검 대상 계좌로 선정할 수 있음

- ① 평균 예탁자산 대비 매매회전율이 400%를 초과하는 계좌

$$\text{매매회전율} = \left[\frac{\sum \text{직전 1개월간의 주식매매금액} \div \sum \text{직전 1개월간의 일별 예탁 자산/일수}}{2} \right] \times 100$$

- ② 평균 예탁자산 대비 손실금액의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계좌

$$\begin{aligned} & \text{- 평균 예탁자산 : } \sum \text{직전 1개월간의 일별 예탁자산} \div \text{직전 1개월의 일수(日數)} \\ & \text{- 손실금액 : } \text{직전 월말 평가금액} - \text{직전 월초 평가금액} + \text{출금액} - \text{입금액} \end{aligned}$$

- ③ 평균 예탁자산 대비 직전 1개월간 징수한 수수료의 비중이 4%를 초과하는 계좌

- 위 ① ~ ③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당매매 점검 대상 계좌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① 평균 예탁자산이 2천만원 미만인 계좌
- ② 오프라인 주문비율이 30% 미만인 계좌

(참고)

- 고객 예탁금의 신규 입금 및 배당 등으로 평균 예탁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회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산정기준을 사용할 수 있음
- 회전율, 손실금액 비중, 수수료 비중 등도 회사가 합리적으로 수정 사용할 수 있으며, ELW·펀드 등 주식 이외의 자산을 매매금액·예탁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음

2. 영업점의 점검방법

- 월 1회 이상 과당매매 계좌 해당 여부를 점검
- 과당매매 점검 대상 계좌로 선정된 계좌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대면, 전화통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매매내역 및 잔고현황을 안내하고, 직원의 위법일임(임의) 매매 또는 과당매매 권유 여부 등을 확인
 - 고객과의 통화는 통화내역을 녹취·보관할 것
- 주문기록 유지여부 점검 및 관리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위법일임(임의) 매매 또는 과당매매 권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
- 위법일임(임의) 매매 또는 과당매매 권유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준법감시부서 등에 보고

3. 본사 준법감시부서 등의 점검 방법

- 영업점 감사시 과당매매 계좌 선정기준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
- 영업점에서 위법일임(임의) 매매 또는 과당매매 권유 등의 혐의로 보고한 계좌 및 3회 이상 연속적으로 과당매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계좌에 대해서는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매매내역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직접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